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207

발의연월일: 2025. 1. 2.

발 의 자:김성원·이종배·김소희

김선교 · 김종양 · 박성훈

김태호 • 고동진 • 정동만

임이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자유총연맹은 새마을운동조직,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함께 범국민적인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3대 국민운동단체임. 이 조직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, 공익캠페인 전개, 취약·소외계층에 대한 나눔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.

그러나 이러한 국민운동단체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노력은 많이 미흡한 실정으로 조직의 운영과 활동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 또한 새마을운동조직과 바 르게살기운동조직은 개인·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 받을 수 있는 반면, 한국자유총연맹은 기부에 대한 근거 가 없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 등을 위한 출

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개인·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할수 있도록 하고, 중앙회와 하부조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운동 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(안 제3조제1항 등).

법률 제 호

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2(정의) 이 법에서 한국자유총연맹(이하 "총연맹"이라 한다)이 란 총회와 중앙본부 그리고 하부조직을 말한다.

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조의3(조직) ① 총연맹은 서울특별시에 중앙본부를 두고, 시·도에 지부를 두며, 시·군·구에 지회를 두고, 읍·면·동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- ② 총연맹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거주자를 위하여 지역별 규모에 따라 해외 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.
 - ③ 총연맹은 통일 준비 민주시민교육과 자유민주주의 가치 창달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제2조제1항 중 "한국자유총연맹(이하 "총연맹"이라 한다)을"을 "총연맹을"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"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,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"를 "총연맹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

은 조 제2항 중 "총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"를 "총연맹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총연맹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총연맹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, 보조금, 기부금의 사용·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1조의2(정의) 이 법에서 한국자
	유총연맹(이하 "총연맹"이라 한
	다)이란 총회와 중앙본부 그리
	고 하부조직을 말한다.
<u><신 설></u>	제1조의3(조직) ① 총연맹은 서울
	특별시에 중앙본부를 두고, 시
	<u>·도에 지부를 두며, 시·군·</u>
	<u>구에 지회를 두고, 읍·면·동</u>
	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	② 총연맹은 정관으로 정하는
	바에 따라 해외거주자를 위하
	여 지역별 규모에 따라 해외
	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.
	③ 총연맹은 통일 준비 민주시
	민교육과 자유민주주의 가치
	창달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
	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제2조(국・공유재산의 대부 및	제2조(국・공유재산의 대부 및
시설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	시설지원) ①
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(이하	<u>총연맹을</u>
<u>"총연맹"이라 한다)을</u> 육성하기	
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	
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	

및 물품 관리법」 등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국·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・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3조(출연·보조 등) ① 국가와 | 제3조(출연·보조 등) ① -----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 비와 시설비,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② 개인·법인 또는 단체는 총│ ② ------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 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② (현행과 같음)

-----총연맹의 운 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 급할 수 있다.

- 연맹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 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.
 - ③ 총연맹에는 출연금 또는 특 정 목적의 <u>기부금을 재원으로</u> 총연맹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 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출연금, 보조금, 기 부금의 사용・관리 및 적립금 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